

학교법인 숙명학원

2021학년도 4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 인	재적이사	8 인
감사정수	2 인	재적감사	1 인

1. 일 시 : 2021년 11월 18일(목) 10: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0년 11월 10일)

2. 장 소 : 숙명여대 소회의실

3. 임원 출석 현황

○ 참석 임원

- 이사(6인) : 이승한, 강동세, 윤영각, 윤은기, 이제호, 장윤금

- 감사(1인) : 백창현

○ 불참 임원

- 이사(2인) : 김인숙, 송영숙

- 감사(0인) :

○ 참석 직원 : 법인사무국장 황영식

4. 안 건

가. 임원(개방이사) 선임 안

나. 교육용기본재산(토지) 매각 안

다.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매각 안

라.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 안

마. 외부회계감사법인 선임 안

5. 회의 내용

가. 개회선언

의장은 금일 회의 소집에 대한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 성원이 되었음을 말하고 개회선언한 후 전회 회의록(2021. 9. 16.) 낭독을 요청하다.

법인사무국장은 전회 회의록 전문을 낭독하다.

의장은 전회 회의록에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전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채택하다.

<간서명>	강 동 세	이 제 호	윤 영 각
-------	-------	-------	-------

나. 심의안건

<제 1 호 안건> 임원(개방이사) 선임 안

의장은 정관 20조의 3(개방이사의 선임)규정에 의거 개방이사 선임 안을 상정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2021. 11. 5)한 자료<별첨 1>에 의하면 송영숙, 이행희 후보자 2인을 추천하였습니다. 추천된 2인 중 1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선임방법에 대하여 참석이사의 의견을 물으니, 참석이사들은 의견을 교환하고 투표에 의하여 개방이사를 선임하기로 하다.

<사무국장은 투표용지를 배부하다>

의장은 투표결과 송영숙 후보 6표로 송영숙 후보가 개방이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하다.

의 결 사 항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비 고
이 사	송영숙		2022.02.13.~2026.02.12.	개방이사 중임

개방감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대상자가 없어 추가 회의를 통해 추천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선임하기로 하다.

<제 2 호 안건> 교육용기본재산(토지) 매각 안

의장은 상기 안건을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니 장운금 이사(총장)는 교육용기본재산 매각 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아래와 같이 승인을 요청하다

1. 부동산의 표시

가. 대상 부동산의 표시

(단위 : m²/원)

구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장부가액	2021공시지가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630-4	전	92	3,680,000	19,899,600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630-7	전	770	30,800,000	158,620,000
합 계			862	34,480,000	178,519,600

나. 매각 금액

감정평가금액 이상

<간서명>	장운금	이재현	윤영각
-------	-----	-----	-----

다. 매각 사유

상기 교육용 부동산은 1988년 용인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시 매입한 농지 중 일부만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고, 도로의 법면은 “전”으로 남아있는 토지로 「농지법」 제6조에 의거 법인은 농지소유가 불가하여 과거 도로법면 유지 필요 판단에 따라 당시의 교직원 명의로 명의 신탁하여 관리하고 있던 토지를 인접 위치 토지소유주가 매입 의사를 표명하여 명의신탁 농지를 매각하여 교육용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라. 매각 금액의 활용

매각대금은 교비(건축기금)로 적립하여 활용하고자 함.

의장은 상기 안전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운영각 이사가 매각할 것을 발의하니 장동세 이사가 동의하고 이에 이재호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6인) 찬성으로 매각을 승인하다.

<제 3 호 안전>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매각 안

의장은 상기 안전을 상정하고, 법인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이에 법인사무국장은 우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 파주시청의 “ 맨박골천 개수공사 손실보상협의 요청(친수하천과 - 2658 (2021.09.07)”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요청 내용(별첨공문)을 설명하다.

이에 의장은 공익사업을 감안하여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다.

의 결 사 항

● 맨박골천 개수공사 편입 부동산의 표시

(단위 : m²/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당초	편입	단가	보상금액
				면적	면적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235-33	답	21	21	21	82,000	1,722,000

<제 4 호 안전>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 안

의장은 상기 안전을 상정하고 법인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이에 사무국장은 1996. 1. 1 구 농지개혁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정부가 매수하여 경작자에게 분배토록 하였고 원소유자인 숙명학원은 피보상자가 되었으며,

<간서명>	김 동 세	이 재 호	정 영 석
-------	-------	-------	-------

농지를 분배받은 경작자가 3년내에 농지 대가를 상환하지 않거나 위 농지가 분배되지 않는 경우 농지구획특별조치법 및 관련 대법판결에 따라 당초의 소유자에 환원됨,
따라서 장산리 73-1외 7필지(목록번호 2에서 9까지)는 98. 12. 31까지 경작자가 농지대가 상환을 하지 않아 원소유자인 숙명학원으로 환원되었고,
장산리 431-1(목록번호 1)은 정부의 무단점유를 인정하여 원소유자에게 귀속되었으며,
마정리 403-4(목록번호 10)는 마장지구경지정리사업(총면적 1,395㎡)중 일부 소유권(717㎡)을 인정받아 숙명학원으로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음.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등의 사건처리 위임계약에 의거, 숙명학원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후 등기완료한 부동산의 25%를 “갑”(숙명학원)이 “을”(주식회사 코스너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로 정하였는데, ‘소송이 확정된 부동산’의 면적과 2021년 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m²/원)

목록	부동산의 표시	지목	면적	공시지가 (2021.1.1.기준)	공시지가 합계	비고
1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31-1	대지	53	250,800	13,292,400	
2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73-1	전	1,737	72,800	126,453,600	
3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73-2	전	760	59,900	45,524,000	
4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73-6	도	250	20,400	5,100,000	
5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113	전	1,484	43,500	64,554,000	
6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116-1	전	539	45,600	24,578,400	
7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172-3	답	161	35,000	5,635,000	
8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172-16	답	434	11,500	4,991,000	
9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105	전	783	84,800	66,398,400	
10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403-4	답	717	46,000	32,982,000	
합 계			6,918		389,508,800	

2021머573632(2021가단5136139)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는 25% 지분 면적은 6,918㎡ × 25% = 1,729.5㎡이고 부동산의 가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89,508,800원 × 25% = 97,377,200원 상당입니다.

이 사건 청구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는(목록번호 2)부동산으로 해당 부동산의 면적은 1,737㎡이고, 공시지가는 126,453,600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과 청구

<간서명>	갑 동세	이 내준	을 영재
-------	------	------	------

사이에 부동산의 면적과 가치에 차이가 발생하여 향후 양 당사자의 부동산 사용·수익 또는 처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공시지가에서 발생한 차액 29,000,000원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 성립에 따라 피고(숙명학원)는 원고(주식회사 코스너지)로부터 2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목록번호 2)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29.자 조정성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다.

이에 의장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참석이사의 의견을 물으니 강동세 이사가 발의하고 운영각 이사가 동의하니 윤은기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승인하다.

<제 5 호 안건> 외부회계감사법인 선임 안

의장은 사립학교법 제31조에 의거 하여 법인은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하고 회계감사 증명서를 첨부하여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한 후 외부회계감사법인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다.

이에 백창현 감사는 외부회계감사법인을 검토한 결과 정동 회계 법인을 추천하다.

운영각 이사가 동의하고 이제호 이사가 재청하니,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하다.

의 결 사 항

○ 2022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법인 선임 : 정동 회계법인

<보고 사항>

1. 직제규정 개정안
2. 보수규정 개정안
3. 비전추진진행사항 - 디지털휴메니티 대학
- 메타버스축제

상기 보고 사항에 대하여 1. 2항은 기획처장이 입실하여 보고하고 3항은 장윤금 총장이 첨부한 자료를 중심으로 상세히 보고한 후 질의응답 등 의견을 교환하다.(기획처장 퇴실하다)

6. 폐회선언

의장은 이사회를 마치고 회의록 간서명자로 강동세 이사, 이제호 이사, 운영각 이사를 선임하고 폐회를 선언하니 12 : 00이 되다.

<간서명>	강 동 세	이 제 호	윤영각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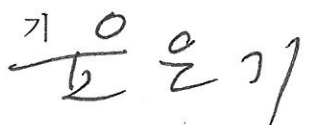
2021년 11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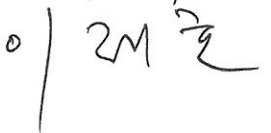
위 사실을 확인함.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장 이 승 

이 사 강 동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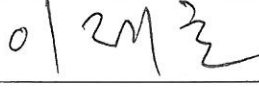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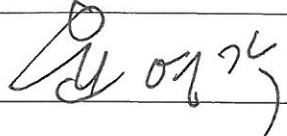
이 사 윤 영 각 

이 사 윤 은 기 

이 사 이 제 호 이 

이 사 장 윤 금 

감 사 백 창 현 

<간서명>			
-------	---	--	---